

	<b>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20
		제정일자	2020.03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교육혁신전략실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비교과 교육과정”이란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.
2. “비교과 프로그램”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.
3. “운영부서”란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내 행정부서 및 학과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 및 대상) ①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.

②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(단기 특강 등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비교과 교육과정의 수강 자격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학 수료자도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.

제4조(비교과 교육과정 운영)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담당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며, 그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운영위원회)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결과보고)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완료 후 프로그램 운영결과나 성과결과 등을 보고하고, 참여학생 이수사항 등은 AU-WINGS 학생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